

※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, 관계 법령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꼭!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

신청 대상자	신청일자	방법	장소
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	2021. 06. 08(화)	인터넷 청약 (08:00~17:30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(청약홈)

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

구 분	당첨자 발표	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	계약기간
일 정	2021. 06. 16(수)	2021. 06. 16(수) ~ 2021. 06. 23(수)	2021. 06. 28(월) ~ 2021. 07. 02(금)
방 법	개별조회 (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)	방문접수 (09:30~16:00) ※ 상세 일정 별도 공지	09:30~16:00
장 소	한국부동산원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 '청약홈' www.applyhome.co.kr	당사 견본주택 (거제시 상동동 202-1번지)	

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평점요소	내 용
대상자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 및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)으로서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* 단, 2018.12.11.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(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) 청약자격요건 :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표 참조) 소형·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※ 출산은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등으로 확인 ※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(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) ※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 ※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양관계증명서 등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 ※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「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」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 세대수 : 85㎡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% 범위 2021.02.02. 개정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에게 우선공급하며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주택을 포함한다.)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합니다.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. ① 제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*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② 제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 *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많은 자 * 재혼일 경우 청약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. *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※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,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,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주택형별 대상 세대수

구분	신혼부부 특별공급		계
	우선공급(70%)	일반공급(30%)	
74A	29	13	42
74B	7	3	10
84A	41	17	58
84B	49	21	70
84C	20	9	29
84D	23	10	33

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표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6,030,161원~ 7,236,192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393,648원~ 8,872,376원	7,778,024원~ 9,333,628원	8,162,400원~ 9,794,87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 ~140%이하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393,648원~ 10,351,106원	7,778,024원~ 10,889,232원	8,162,400원~ 11,427,35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 ~160%이하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9원~ 12,444,837원	9,794,880원~ 13,059,838원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의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명 제출 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‘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(직인날인)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직장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무서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무서 등기소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원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무서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사업자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
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직장 세무서 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센터 	
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직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	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본주택 	